

# 정 관

## 제 1 장 총 칙

제 1 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캄시스라 한다. 영문으로는 CammSys Corp.라 표기한다.

제 2 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반도체 생산용 장비 제조, 부품제조 판매업
2. 반도체 제조, 부품제조 판매업
3. 전기전자 제조, 부품제조 판매업
4. LCD 장비 및 부품제조 판매업
5. 광학용품 기구 및 부품 제조, 판매업
6. 디지털미디어기기 및 부품제조, 판매업
7. 도장장비, 부품제조 및 도료 제조, 판매업
8. 기타 자동차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9.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10.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11. 부동산 매매업
12. 부동산 임대업
13. 서비스업
14. 폐기물처리 및 환경 설비 제조, 판매업
15. 지문인식 및 보안관련 전자 통신 부품제조, 판매업
16. 각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제조, 판매업
17. 각종 자동차 제조, 판매업
18. 각종 자동차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업, 통신판매업
19. 자동차 임대업
20. 각종 차량의 수리업
21. 자동차 검사대행사업
22. 자동차 등록대행업
23. 각종 차량 정비사업
24. 자동차 관련 정비기기 판매업
25. 각 호의 도·소매업

26. 각 호의 수출입업

27. 각 호와 관련된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 사업과 통신판매업

28. 각 호의 부대되는 사업 일체

제 3 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인천광역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ammsys.net>)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한다.

## 제 2 장 주 식

제 5 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오억주로 한다.

제 6 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 백원으로 한다.

제 7 조(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 십만주로 한다.

제 8 조(주식의 종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제 8 조의 2(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 8 조의 3(주식의 수 및 내용)

-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 ② 제 5 조의 발행예정 주식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이억오천만주로 하되, 위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이사회결의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 우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③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2% 이상으로 우선배당율을 정한다.
-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하는 참가적 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으며, 우선배당율 외에는 보통주식의 배당에 참가하지 못하는 비참가적 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다.
-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어느 사업년도에 있어서 우선 배당율에 해당하는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년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하는 누적적 우선주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으며, 누적된 미배당분을 배당하지 아니하는 비누적적 우선주식으로 발행 할 수도 있다.
- ⑥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내용("전환우선주식") 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익으로 상환할 수 있는 내용("상환우선주식")을 정할 수 있다.
- ⑦ 전환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보통주식의 액면가액 이상으로 이사회가 정하는 가액,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전환우선주식 발행 후 3월이 경과한 날로서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⑧ 상환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환가액은 당해 우선주식의 액면가 이상으로 이사회가 정하는 가액, 상환기간은 우선주식 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이사회가 정하는 기간, 상환방법은 이익 중 상환의 재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이사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⑨ 우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위 2)항 내지 8)항에서 정한 여러 가지 내용을 혼합하여 발행할 수 있다.
- ⑩ 당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보통주식에 대하여는 보통주식을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같은 조건의 우선주식을 각 그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필요에 따라서 유상증자,

무상증자나 주식배당시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모든 주주는 그 발행되는 주식에 대하여 배정 또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제 9 조(주권의 종류)(삭제)

### 제 10 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 분의 20 범위 내에서 이사회결의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의 경영전략상 필요한 국내외 투자가, 제휴기업 그리고 국내외 금융기관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경영 전략상 필요에 의해 국내외 타 회사를 인수하거나 국내외 타 회사에 투자할 때 그 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상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 위 각호의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범위내에서 신주발행이 가능하다.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제 2 항 각호의 어느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등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⑤ 제 2 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 416 조 제 1 호, 제 2 호, 제 2 호의 2, 제 3 호 및 제 4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 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제 10 조의 3(주식매수선택권)

① 당회사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5 의 범위 내에서 상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0 범위 내에서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한도 이내로 이사회결의로 회사의 임원(회사의 이사는 제외한다) 또는 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고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그 부여일 이후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 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 시행령 제 29 조 제 1 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 542 조의 8 제 2 항 제 5 호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같은 항 제 6 호의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상법 시행령 제 29 조 제 1 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되는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 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삭제

⑦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일로부터 2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 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 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가 제 1 항의

결의일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4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 10 조의 4(신주의 동등배당)

①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그 배당기준일까지 발행한 신주에 대하여는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

#### 제 10 조의 5(주식의 소각) (삭제)

#### 제 11 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 12 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삭제)

#### 제 13 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이 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 ② 이 회사가 제 1 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 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 개월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 ③ 이 회사가 제 1 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사 채

#### 제 14 조(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 제 14 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5 호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 제 15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 14 조의 2 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단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 10 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⑥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에 정한 바에 의한다. 다만,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제 14 조의 2 제 1 항 제 1 호 내지 제 5 호 사유로 인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 제 16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1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 제 4 장 주주총회

### 제 17 조(소집시기)

- ① 이 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 ② (삭제)

### 제 18 조(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대표이사(사장)이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사장)이 유고 시에는 제 34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19 조(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이 회사가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 542 조의 4 제 3 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20 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 제 21 조(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사장)으로 한다.
- ② 대표이사(사장)이 유고시에는 제 34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 22 조(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 23 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 주마다 1 개로 한다.

#### 제 24 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 제 25 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 26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7 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②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회사는 제 2 항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 3 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 28 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록은 그 경과와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 5 장 이사 · 이사회

### 제 29 조(이사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6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 제 30 조(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 382 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30 조의 2(이사의 해임)

- ① 외부로부터의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 등으로 인한 주주총회에서의 이사 해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되 그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제 1항의 요건을 변경하고자 정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제 1항에 정한 결의 요건에 의하여만 변경할 수 있다.

### 제 31 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 제 32 조(이사의 보선)

-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 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 29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33 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 제 34 조(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사장)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사장)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 34 조의 2(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4 조의 3(이사·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① 이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 399 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 ②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 397 조(경업금지),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 35 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제 36 조(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 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의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제 37 조(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록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38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금 규정에 의한다.
- ③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임기 만료이전에 외부의 적대적 기업인수 및 합병으로 인하여 법률 또는 정관위반, 임무 해태등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임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사에게 회사의 “임원보수 및 퇴직금규정”에서 정하는 퇴직금 이외에 퇴직보상액으로 대표이사에게 50 억원, 이사에게 30 억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 ④ 제 3 항의 조항을 개정 또는 변경할 경우 그 효력은 개정 또는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후 발생한다.

### 제 40 조(상담역 및 고문)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 제 6 장 감 사

### 제 40 조의 2(감사의 선임·해임)

- ① 이 회사의 감사는 1 명 이상으로 한다.

-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하며,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⑤ 제 3 항·제 4 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 제 41 조의 3(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로 한다.

#### 제 41 조의 4(감사의 보선)

감사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 40 조의 2 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 41 조의 5(감사의 직무)

-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제 5 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⑦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 제 41 조의 6(감사록)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 41 조의 7(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 제 7 장 계 산

제 42 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 제 43 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 1)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 주 전(연결재무제표는 4 주 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 (주 2)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 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보고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필수로 첨부하여야 함.

④ 제 1 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 1 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⑤ 제 4 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사장)은 제 1 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사장)는 제 1 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사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⑦ 대표이사(사장)는 제 1 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 4 항에 의한 이사회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제 44 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 사업년도의 처분 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 처분액

#### 제 45 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 1 항의 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는 배당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46 조(배당금지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 ② 제 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제 47 조(주식의 소각) (삭제)

제 48 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외부감사인을 선정해야 하고,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0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제 10 조의 2항의 3, 제 27 조는 2000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0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04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0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0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0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0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적용범위)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기타 법령에 따른다. 단, 본 정관에서 인용하는 법령이 변경 또는 폐지되고 관계법령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관계법령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4 조의 개정 내용은 2010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1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1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1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6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 1 조(시행일)이 정관은 2021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2의 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 3 조(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40조 2의 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